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국가간 항공보안 신뢰에 기반한 보안검색 완화·면제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검색완화 또는 면제의 요건, 관계기관 간 정보제공 의무 등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함(안 제17조의4).

II. 검토의견

- 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및 이용 등(안 제17조의4 신설)
 - 개정안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¹⁾에 따라 ① 보안검색 및 세관검색을 면제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

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

2.4.9. 권고 - 각 계약국은 불필요한 보안통제의 중복을 방지하여 항공보안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출발지에서 효과적인 보안통제가 적용됨으로써 보장되는 보안 결과의 동등성을 검증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4.4.4 각 계약국은 상업용 항공운송사업 운항의 환승 승객과 그들이 기내 휴대물품이 항공기 탑승 전에 보안검색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계약국이 검증 절차를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국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즉 해당 승객과 그들의 기내 휴대물품이 출발 지점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보안검색을 받았고, 그 이후 출발공항에서이 보안검색 시점부터 환승 공항에서의 출발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승인되지 않은 방해행위로부터 보호되었음을 보장하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이다.

4.5.5 각 계약국은 상업용 항공운송사업 운항에 투입되는 항공기에 적재되기 전에 환승 위탁수하물이 보안검색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계약국이 검증절차를 수립하고, 연관된 다른 계약국과 협력하여 해당 위탁수하물이 출발 지점에서 보안검색을 받았으며, 그 이후 출발 공항에서의 검색시점부터 환승 공항에서의 출발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연속해서 승인되지 않은 방해행위로부터 보호되었음을 보장하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7조의4제1항)과 ② 환승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의4제2항)을 정하려는 것임.

- (조문의 위치) 그런데, 안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²⁾에 따른 보안검색의 결과이고, 안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면제하는 것도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보안검색인 반면, 현행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은 직접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상용화주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정안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제17조 다음에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조문의 체계) 또한, 보안검색의 결과 제공과 환승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는 그 내용과 요건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별도 조문으로 나눠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고려하

2)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② ~ ⑧ (생략)

제16조(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 ① 공항운영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하여도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검색의 방법·절차·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략)

제17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하면 통과 승객이나 환승 승객으로 하여금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17조의2(상용화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색장비, 항공보안검색요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화주(貨主) 또는 항공화물을 포장하여 보관 및 운송하는 자를 지정하여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7조의3(상용화주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용화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i) 환승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의2로 신설하고, ii) 보안검색 결과의 제공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의3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함.

< 수정 의 견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7조의2 (생략) <신 설>	제17조의2 (현행과 같음) 제17조의4(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및 이용 등) ① (생략) ② (생략)	제17조의4 (현행 제17조의2와 같음) 제17조의3(----- ---- 제공) (생략) 제17조의2(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 (생략)
제17조의3 (생략)	제17조의3 (현행과 같음)	제17조의5 (생략)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